

---

---

# 이동통신단말기보험 약관

(약관분류코드 : 6410-0000-201301)

---

---

현대해상화재보험

---

## 목 차

---

### ■ 약 관

□ 보 통 약 관	2 - 18
□ 특 별 약 관	19 - 24
공동인수 특별약관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	
분실/도난 위험 보장제외 특별약관	
확장수리보장 특별약관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 이동통신단말기보험 보통약관

## 제 1 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제 1 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 1 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제 2 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송부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신한 때에 당해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2.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3.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제 1 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드리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10 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 2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제 3 조(제 1 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③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 15 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 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 17 조(계약의 해지), 제 19 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 29 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④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 1 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 1 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 **제 4 조(제 2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제 5 조 (청약의 철회)

- ① 가계성 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통신판매 계약(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에 한함)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경우에는 3 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 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제 6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항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 가 있을 경우에는 제 20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제 7 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
- ② 제 1 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그 기간의 말일(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최초의 평일)에 끝납니다.
- ③ 회사가 제 1 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 1 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 1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 20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 8 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 7 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제 20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 1 조(계약의 성립), 제 3 조(제 1 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 15 조(계약전 알릴 의무) 및 제 17 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제 9 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20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6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③ 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 일을 경과하여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 1 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 일 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제 1 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제 10 조(보험목적의 범위)

- ① 이 약관에서 보험의 목적으로 함은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명시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소유의 이동통신단말기(이하 '피보험단말기'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아래의 물건은 피보험단말기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밀수품이나 불법적인 운송 또는 거래과정에 있는 물건
  2. 데이터의 가치, 데이터의 복구나 교체, 탐색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해당 단말기 기종에 기본으로 포함되어있지 않은 프로그램
  3. 영구히 장착 또는 부착되어 있는 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용으로 장착된 장비, 제조시 제품에 장착되지 않은 부속품 및 액세서리
  4. 장식(보호)용 덮개,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배터리, 펜, 안테나, 메모리카드, 제품 본체와 분리되어 사용되는 충전기나 USB 케이블 등 보험의 목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기타 장비
  5. 수리, 교체 또는 기타 목적으로 "지정서비스센터"나 "지정서비스센터"가 지정한 자를 제외한 타인에게 위탁하였거나 위탁받은 물건
  6.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동통신회사"의 통화요금을 포함한 제반 수수료 및 요금

## **제 11 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장지역내에서 보험기간중에 피보험단말기에 발생된 급격하고도 우연한 아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이를 수리, 폐기 또는 교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전손사고

가. 피보험단말기의 분실 또는 도난

나. 피보험단말기의 파손(화재, 침수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 수리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거나 단말기 제조업체의 공식 A/S 센터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정된 경우

### 2. 분손사고

가. 피보험단말기의 파손으로 수리비용이 사고 당시의 출고가 이하인 경우

② 회사는 손해액에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위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피보험단말기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를 말합니다.

④ 자기부담금은 위 제 3 항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제 12 조(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시점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합니다.

## **제 13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정한 사고횟수 제한, 사고당 보상한도 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의하여 보상을 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그 보상액을 뺀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단, 전손사고로 보상을 받으시는 경우 또는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인 경우에 이 보험은 종료됩니다.

③ 전손사고의 경우, 물류 및 배송비용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상에 제공되는 보험가입금액에 추가하여 지급됩니다. 단, 물류 또는 배송건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상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물류 및 배송비용은 자기부담금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 **제 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대리인 포함합니다)의 고의로 생긴 손해로 인한 비용
2. 단말기 제작사의 보증프로그램이나 각종 수리보장프로그램(리콜을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되는 손해
3. 단말기의 변형 및 개조에 의한 고장
4.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위 제 4 호 이외의 방사선을 죄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7. 지진, 분화, 태풍, 사이클론, 토네이도,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8. 컴퓨터 바이러스나, 유해한 코드 또는 이와 유사한 컴퓨터 명령으로
  - 가. 단말기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거나
  - 나. 단말기에 저장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의 파괴 또는 이와 유사한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9.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재물의 압류, 몰수 또는 파괴로 인한 손해
10. 사용중지로 인한 수익의 상실 등 모든 종류의 간접 손실
11. 자연(보험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한함), 사용손실, 서비스중단으로 인한 손실, 시장 가치의 하락, 또는 기타 간접손실(시간손실, 이익상실, 단말기의 수리 또는 대체의 지연 또는 이로 인한 불편들을 포함 합니다)
12. 단말기의 노후화 또는 감가상각
13. 마모나 성능의 저하, 외래적 영향이 아닌 내재적 결함 등으로 인한 단순한 기기고장 및 단말기의 손상을 초래한 디자인상의 결함 또는 기타 품질상의 결함
14. 배터리 전원이나 기타 인위적인 전류에 의한 기계적 손해 또는 장해
15. 프로그래밍, 청소, 조정, 수리 변경, 앱다운로드에 따른 오류 등 보험목적물에 행해진 기타 작업

16. 회사는 그 원인에 관계없이 단말기 본래의 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외관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교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외관의 파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가. 표면의 갈라짐, 틈, 긁힘, 뒤틀림
  - 나. 색상 또는 기타 외형의 변화
17. 부정행위, 속임수 또는 사기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목적물을 위탁받은 자에 의한 고의적인 분해 또는 해체
18. 피보험자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USIM 이 장착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19. 수리내역이 확인될 수 없거나 증명될 수 없는 손해
20. 제품을 수리받기 위해 발생한 피보험자의 교통비용이나 택배·운송비용
21. 제3자 또는 운송업체(항공사, 철도, 우편서비스 또는 기타 배달서비스)의 관리·통제 하에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22. 보험증권에 유예기간(보험기간 개시 후 일정기간 동안 보장하지 않는 기간)이 기재된 경우 해당 기간동안에 발생한 손해
23. 파손사고에 대하여 회사 또는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A/S 지정점 또는 협력사 이외의 곳에서 수리한 경우
2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발송된 보상단말기의 수령의 지체함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 **제 15 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제 16 조(계약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자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양도할 때
  3.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

-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자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제 17 조(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 15 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 16 조(계약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④ 제 3 항 제 1 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계약 체결일로부터 3 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제 3 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 3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 제 18 조(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 19 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 20 조(보험료의 환급)

-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 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 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 제 21 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 제 22 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피보험단말기에 사고가 생긴 경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회사 또는 "지정서비스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1.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 등 소유권 확인을 위한 사항
  2. 전화번호, 단말기 식별번호 등 보험목적물에 관한 사항
  3.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도난, 분실 또는 파손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 ② 또한 피보험단말기에 도난, 분실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 사실을 '통신사'에 알려 이동전화서비스가 중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 ③ 도난 또는 분실의 경우 회사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도난/분실사실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도난/분실사실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을 반드시 "지정서비스센터"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⑤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대리인은 회사의 사고조사에 동의 및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⑥ 회사는 필요한 경우 단말기를 회사 또는 "지정서비스센터"에게 송부를 요청하고 장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제 23 조(손해방지 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 제 24 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지정서비스센터"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전손사고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회사는 "지정서비스센터"를 통해 동일모델의 보상단말기를 현물로 제공합니다. 다만, 보상단말기의 출고가가 보험가입금액 (파손사고로 인하여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 후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2. 보상단말기는 가입당시와 동일한 통신사의 통신망으로 개통된 상태로 보상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미개통된 단말기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3. 분손사고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리비용에서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상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 ② 제 1 항의 경우 회사의 판단에 따라 동종 · 동급의 유사한 성능을 가진 다른 제품으로 교체(리퍼비쉬 제품을 포함합니다)하거나, 원제조사 이외의 유사부품으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 제 25 조(보험금의 분담)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 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 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같은 경우 : 손해액×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다른 경우 : 손해액×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 제 26 조(보험금의 지급)

- ① 회사는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 후 7 일 이내에 "지정서비스센터"에 교체 요청을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도난/분실사실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 영수증 사본 등)

② 제 1 항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 1 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제 22 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규정에 따라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제 27 조(현물보상)

제 24 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현물의 보상을 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 28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 20 조(보험료의 환급) 제 1 항에 의하여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제 29 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 30 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제 31 조(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 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청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동거인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고의로 인한 손해는 제외합니다.

### 제 32 조(잔존물)

- ① 회사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 ② 이 때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수리가 불가한 피보험단말기를 "지정서비스센터"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반납을 위해 필요한 우편요금은 "지정서비스센터"가 부담합니다.
- ③ 손상된 피보험단말기가 회사로 교체 또는 수리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반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명시된 잔존물 미회수 부담금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 ④ 분실 또는 도난당한 피보험단말기가 회수되는 경우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 제 33 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제 34 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 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 2 항, 제 32 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 28 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체결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 **제 35 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 36 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 37 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제 38 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제 39 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자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는 회사는 제 2 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제 40 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 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 20 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 **제 41 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제 42 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따릅니다.

#### [용어풀이]

1. "지정서비스센터"란 회사를 위해 피보험단말기의 수리 및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이동통신회사"란 무선전화 또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3. "보험가액"이란 사고 발생 당시의 가액으로서 사고시점의 출고가를 말합니다. 다만, 해당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보상시점의 출고가)을 초과할 때에는 그 보상시점의 출고가를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4. “리퍼비쉬 제품’이란 단말기 일부 부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부품을 교체하여 재생산 한 단말기를 말합니다.
5. “출고가”란 통신서비스 유통채널에 통신사가 출고한 가격을 말합니다.

---

## 이동통신단말기보험 특별약관

---

### 공동인수 특별약관

#### 제 1 조 (책임의 분담)

이 보험증권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 )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 사 명 인수비율(금액)

#### 제 2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 31 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소유, 관리, 기타 이해관계를 지니고 이 보험에 가입한 개인, 회사, 법인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도난 · 분실 부담보 특별약관

####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 11 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피보험단말기의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제 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확장 수리 보장 특약

이 보험계약상의 보통약관, 다른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래와 같이 보장합니다.

###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결함에 대한 보장은 피보험단말기 기기의 제품보증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시작되며 당 증권의 보장기간의 말일에 종료됩니다. (수리 보장 기간) 이 증권상의 보험은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 단말기를 선택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것입니다.

1. 수리 보장 기간 중 피보험단말기의 제품 또는 제작상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2. 정상적인 사용 중에 발생한 기계적 또는 전기적 결함

### 제 2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 목적물의 설치, 제거, 폐기 또는 가입하지 않는 단말기의 설치, 제거, 수리, 관리(액세사리, 부속물 또는 다른 기기 포함) 또는 목적물 외부의 네트워크 또는 이동통신망
2. 사고, 남용, 태만, 오용(공인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자에 의한 오설치, 수리, 관리 포함), 공인되지 않은 조작, 극한의 환경(극한의 기온 또는 습도 포함), 극한의 물리적, 전기적 스트레스 또는 전파방해, 전력의 급격한 변동 또는 파동, 번개, 정전기, 화재, 자연재해 또는 그 밖의 외부적인 원인으로 인한 목적물의 손상
3. 변경, 훼손, 제거된 일련번호를 가진 목적물
4. 목적물과 동시에 구입한 지 여부를 떠나, 액세사리를 포함하여 피보험단말기가 아닌 기기에 의해 발생한 문제
5. 기기에 내장된 배터리의 기능상실, 소모, 손해 또는 내부 배터리의 충전을 위해 사용된 기기의 손해

6. 이 프로그램 개시 이후 발생한 정부기관 등의 법률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7. 네트워크 또는 무선통신 서비스의 기능, 바이러스 또는 담보기기에 도입된 다른 소프트웨어에 의한 문제들
8. 분실 또는 도난당한 담보기기
9. 굵힘, 찌그러짐, 포트의 깨진 플라스틱 등을 포함한 외형적인 손상
10. 담보기기의 예방보전
11. 담보기기가 서비스되는 동안 대체기기의 제공
12. 담보기기에 저장되거나 기록된 소프트웨어 또는 데이터의 손상, 손실
13. 제조사의 보증에 의해 보장되거나 공지여부를 떠나 배송 등에 부과된 배송, 운반비용
14. 제품 리콜을 야기한 기계적인 결함
15. 전쟁 또는 각종 적대행위(침략, 모반, 반란, 폭동, 민란 등); 불법행위
16. 일반적인 소모, 마모 또는 점진적인 감소로 인한 기계적 결함
17. 제품 또는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결함이 아닌 경우,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소모되게끔 설계된 보호막
18. 특별히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 기술적 결함에 기인하지 않은 손상 또는 담보기기의 통상적인 사용

### 제 3 조(보통약관과의 관계)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다른 조건은 이 특약에 반하지 않는 한 이동통신단말기보험 보통약관 혹은 특별약관에서 정한 조건에 따릅니다.

##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 제 1 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동통신사(이동통신사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합니다)가 계약자가 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자로서 회사가 보험가입을 승인한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포괄계약에 적용합니다.

## [용어풀이]

“포괄계약”이란 계약자가 동일하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한 일정기간(포괄계약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피보험단말기가 증가한 경우 계약자는 최초 계약을 맺고 그 포괄계약기간 동안 증가된 피보험단말기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없이 각각의 보험기간 및 보험조건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제 2 조(포괄계약 보험료정산)

- ① 계약자는 포괄계약에 따라 피보험자, 피보험단말기 정보, 휴대폰 개통일, 부가서비스 가입일(휴대폰의 도난, 분실, 파손 관련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기존 부가서비스 가입자의 보상개시일 및 잔존보험가입금액 등을 회사가 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회사에 통보합니다.
- ② 계약자는 포괄계약에 따라 보험계약 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예치보험료를 회사에 납입하고 다음에 따라 정산합니다.
  1. 예치보험료는 직전연도 1년간의 평균 피보험단말기 대수를 기준으로 정산기간(매월, 매분기 등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회사와 약정한 기간)에 따라 적용하거나, 직전 정산기간의 피보험단말기 대수를 기준으로 매 정산기간마다 적용합니다. 다만, 직전 정산기간의 피보험단말기 대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가서비스 가입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계약자는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계약자는 위 제 2 호의 자료에 의하여 정산기간마다 산출된 보험료(정산보험료라 하며 개별 피보험단말기에 대하여 월 단위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합니다)를 보험증권에서 정한 기일 내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5. 포괄계약 기간 중 개별 피보험단말기의 보험계약이 해지나 종료된 경우에는 그 시점 이후부터 정산대상에서 제외하며, 해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합니다. 다만, 전손(도난, 분실 등)이 발생하고 사고일과 보상기변일(계약자의 부가서비스 해지일을 말합니다)이 불일치하는 경우 보상기변일을 종료일로 보고 그 시점 이후부터는 정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보통약관 제 5 조(청약의 철회)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보험 개시일 이후 15 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이동통신서비스계약 또는 부가서비스가입을 철회한 경우에 계약자는 그 내용을 회사에 통지함으로써 그 피보험단말기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그 기간동안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7. 회사는 포괄계약기간 종료시 포괄계약기간 동안에 산출된 정산보험료의 합과 예치보험료 합 사이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1. 정산보험료 합이 예치보험료 합보다 많을 경우 : 정산보험료 합과 예치보험료 합의 차액을 계약자로부터 받습니다.
  2. 정산보험료 합이 예치보험료 합보다 적을 경우 : 예치보험료 합과 정산보험료 합의 차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최소보험료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은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는 제 2 항제 4 호에 따른 정산 및 예치보험료의 납입연체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제 7 조(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④ 회사는 제 2 항의 포괄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 개별 피보험단말기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제 20 조(보험료의 환급) 제 1 항 제 2 호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제 3 조(개별 피보험자의 보상기간)**

- ① 회사는 제 2 조(포괄계약 보험료정산) 제 1 항에 따른 보험기간 및 보험조건에 따라 각각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 ② 개별 피보험자에 대한 담보는 제 1 항에 따른 개시일[부가서비스 가입자로 등록된 날의 익일(00)시(다만, 부가서비스 가입이후 통화내역 또는 모바일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이 개시되지 아니합니다.) 또는 포괄계약 개시 이전 부가서비스 가입자는 제 2 조제 1 항에 따른 보상개시일]에 시작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날과 부가서비스 최초가입일로부터 ( )개월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계속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이동통신서비스가 해지(부가서비스가 해지된 경우도 포함합니다)된 경우에는 그 해지 등록시점부터 담보는 종료됩니다.

### **제 4 조(개별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 17 조(계약의 해지)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개별 피보험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계약(부가서비스 포함) 해지에 따른 개별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 28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도 불구하고 개별 피보험자의 고의를 사유로 이 포괄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합니다.

### **제 5 조(총보상한도 설정)**

회사는 제 3 조(개별 피보험자의 보상기간)에도 불구하고 포괄계약에 대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간단위별 손해율 또는 손해액 등을 기준으로 총보상한도를 정한 경우에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금의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 제 6 조(적용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리고, 피보험자에게는 우편, 전자우편, 전자메세지 등으로 보험가입 사실을 안내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회사 명의 또는 계약자와 회사 공동명의로 안내 할 수 있습니다.

## 제 7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 제 1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아 니합니다.

- ①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 ②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 제 2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